

뇌사자 장기이식을 위한 국가 및 병원 지원금에 대한 대한이식학회의 의견(statement)

세계 이식학회와 WHO는 2008년 이스탄불 선언을 통하여 각 국가별로 장기의 공정 분배와 생체 기증자의 보호를 위하여 뇌사자 장기기증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.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(이하 DICG)가 결성되었고, DICG 는 2015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생명 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함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뇌사 기증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국가든 개인이든 금전적인 보상을 금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한편,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뇌사장기이식에 대한 법이 제정되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 장에 장제비, 진료비,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에 대한이식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나라 뇌사장기 기증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,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.

-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 나눔의 행위로 이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.
- 장제비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. 따라서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하나인 부의는 존중하되, 장제비 지원이 장기기증의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.
- 현재의 위로금, 병원위로금, 발생 전 병원 비용 항목은 금전적 대가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혹은 변경한다.
- 기증의사가 있었으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장기제공자와 가족의 뜻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타당한 지원 방안을 고려한다.
- 장기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향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비로 정산하도록 한다.
- 금전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. 즉, 국가에서 뇌사자의 장례식을 대행해 주거나, 추모공원을 설립하거나, 뇌사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- 대한이식학회는 뇌사장기 기증 지원금에 관련 되어 발행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증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, 관련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